긴급 입찰 사유서

□ 계약 개요

○ 계 약 명 : PE 시스템 고전압 신뢰성 평가 장비

○ 계약기간 : 2026년 10월 31일 이내

○ 입찰예산 : 1,250,000,000원(부가세 포함)

○ 입찰방법 : 전자입찰(조달청 나라장터)

□ 긴급입찰 사유

○ 본 계약은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수행하는 「모빌리티 모터 혁신기술 육성사업」 과제에서 구축되는 PE 시스템 고전압 신뢰성 평가 장비 구매를 수행하는 계약임

○ 본 사업은 장비구축 비용이 사업비의 20%를 차지하는 장비로, 인프라 구축을 주 목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으로 집행률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장비가 연차 종료 2개월 전인 10월 내에 입고, 검수, 최종 대금 지급에 따른 정산 진행이 완료되어야 함

○ 또한 본 사업의 3차년도(2026년) 사업협약이 늦게 이루어져 잔여기간을 고려 및 구매 유찰 및 재공고 가능성을 고려할 경우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긴급 입찰을 통하여 사업자의 조기 선정, 사업착수가 필요함

○ 장비 이용 기업 수, 장비 활용 수익금 등 사업의 장비 활용 관련 정량적 목표 달성을 위해 구축 이후 달성을 위한 시간이 필요함

○ 이에, 당해연도 수행기간동안의 사업목표 달성 긴급조달을 통해 사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자 함

[별첨] 관련근거 :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」

제23조(연구시설·장비비 공통 사용기준)①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하여 자산으로 등록하는 연구시설·장비에 대하여는 구입가로 계상하여야 한다.

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73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거쳐 협약을 변경한 후 해당 연구시설·장비비를 사용하여야 한다.

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1억 원 이상(부가가치세 및 구입·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)의 연구장비를 구입하려는 경우에 「국가연구개발 시설·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사용하여야 한다.

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취득가격이 3천만 원 이상(부가가치세 및 구입·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)인 장비 또는 3천만 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「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」 제4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·장비 종합정보시스템(이하 "연구시설·장비종합정보시스템(ZEUS)"라 한다)에 등록된 장비의 공동활용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 「국가연구개발 시설·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.

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시설·장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구입·설치 또는 임차를 완료한 경우에 해당 연구시설·장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.

1. 연구시설·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또는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법 제4조에 따른 기본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: 연구개발과제(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종료일

2. 재난, 재해, 그 밖에 경제적·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: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1개월 전

3.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: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2개월 전